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27
----------	------

제출년월일 : 2019. 10.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개정이유

DTC섬유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박물관의 명칭이 변경 등록됨에 따라 “DTC섬유박물관” 명칭을 “대구섬유박물관”으로 정비하여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운영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DTC섬유박물관 명칭 변경에 따른 “DTC섬유박물관“, “DTC섬유박물관 운영위원회“, “DTC섬유박물관장“을 “대구섬유박물관“, “대구섬유박물관 운영위원회“, “대구섬유박물관장“으로 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8. 10. ~ 8. 30.(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개선할 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섬유박물관”을 “대구섬유박물관(이하 “섬유박물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섬유박물관 운영”을 “대구섬유박물관 운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DTC섬유박물관(이하 “섬유박물관”이라 한다)”을 “섬유박물관”으로, “DTC섬유박물관운영위원회”를 “대구섬유박물관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DTC섬유박물관장”을 “대구섬유박물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DTC섬유박물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섬유박물관운영위원회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치 등)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이하 “DTC” 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봉무동)에 위치하며, <u>섬유박물관</u>, 다목적홀,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등의 시설을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u>섬유박물관 운영</u></p> <p>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기능)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시장은 <u>DTC섬유박물관</u> (이하 “<u>섬유박물관</u>”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u>DTC섬유박물관운영위원회</u> (이하 “<u>운영위원회</u>” 라 한다)를 둔다.</p> <p>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2. (생략)</p> <p>3. 그 밖에 <u>섬유박물관 운영</u>에 관하여 <u>DTC섬유박물관장</u>(이하 “<u>박물관장</u>”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2조(위치 등) ----- ----- ----- <u>대구섬유박물관</u>(이하 “<u>섬유박물관</u>” 이라 한다)----- -----.</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u>대구섬유박물관 운영</u></p> <p>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기능) ① ----- ----- <u>섬유박물관</u>----- ----- <u>대구섬유박물관운영위원회</u>----- -----.</p> <p>②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u>대구섬유박물관장</u>----- ----- -</p>

관 계 법 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운영 위원회)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국·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제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DTC섬유박물관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되는 발생비용이 없어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경제국 섬유패션과장 여수동